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소득세와 절세방안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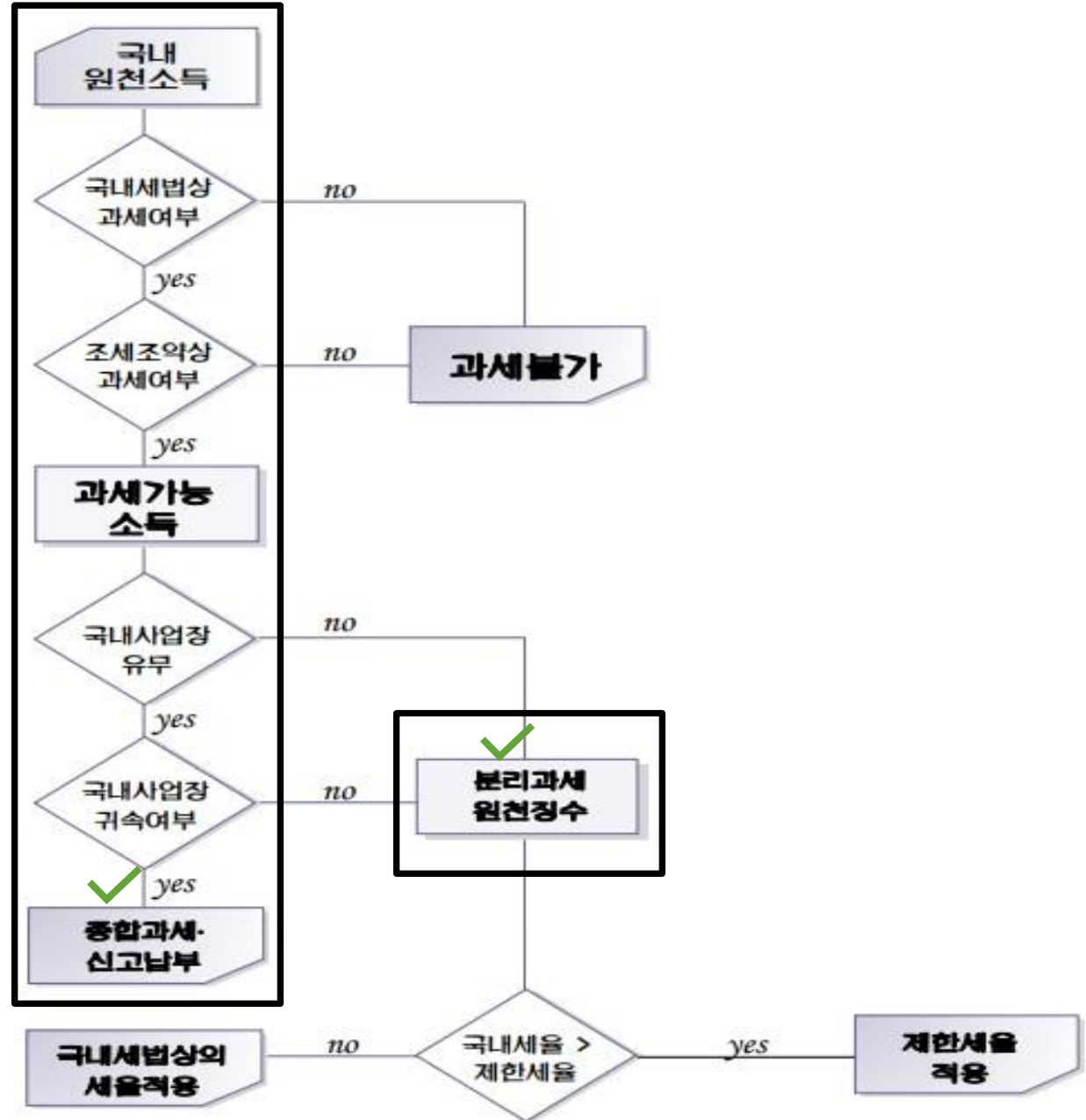
1. 개요
2. 외국인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3. 외국인 근로자 공제 항목
주요 내용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특례

개요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구분	정의	과세 범위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전세계소득에 과세 ◆ 단기거주외국인에 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거주외국인 : 해당 과세기간이전 10년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과세범위 :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아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 체계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국내원천소득 ¹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과세방법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 2)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14%)	
2호	배당소득			20%	
3호	부동산소득			-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10호	사용료소득			20%	
11호	유가증권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 익의 20%중 적은 금액	
12호	기타소득			20%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20%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 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 익의 20%중 적은 금액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포함됨
-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원천징수함
- 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예외 : 소득세법 제156조의4(원천징수절차 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기본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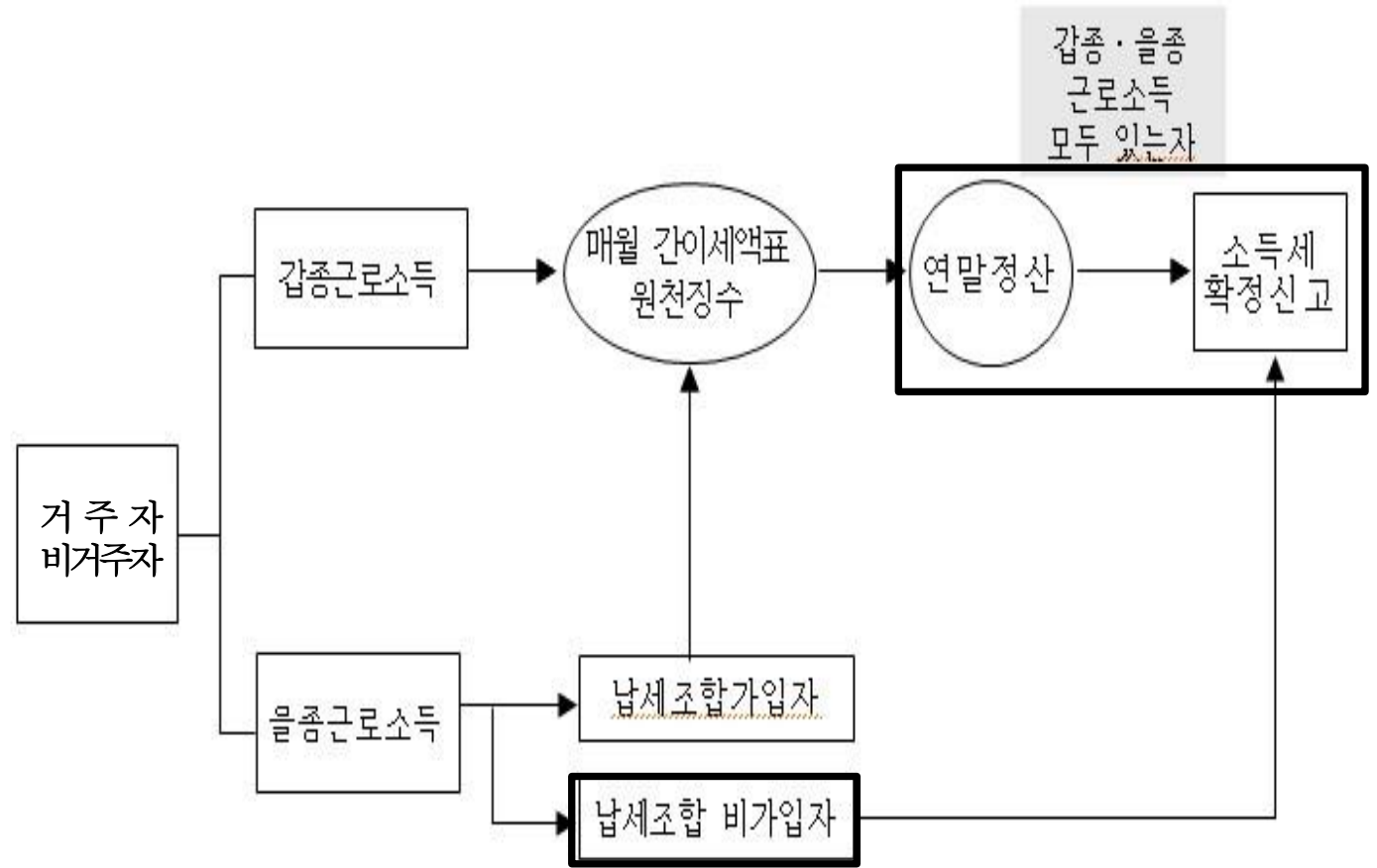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200만 원 이하	6%	-
4천 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8천 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외국인(거주자 / 비거주자)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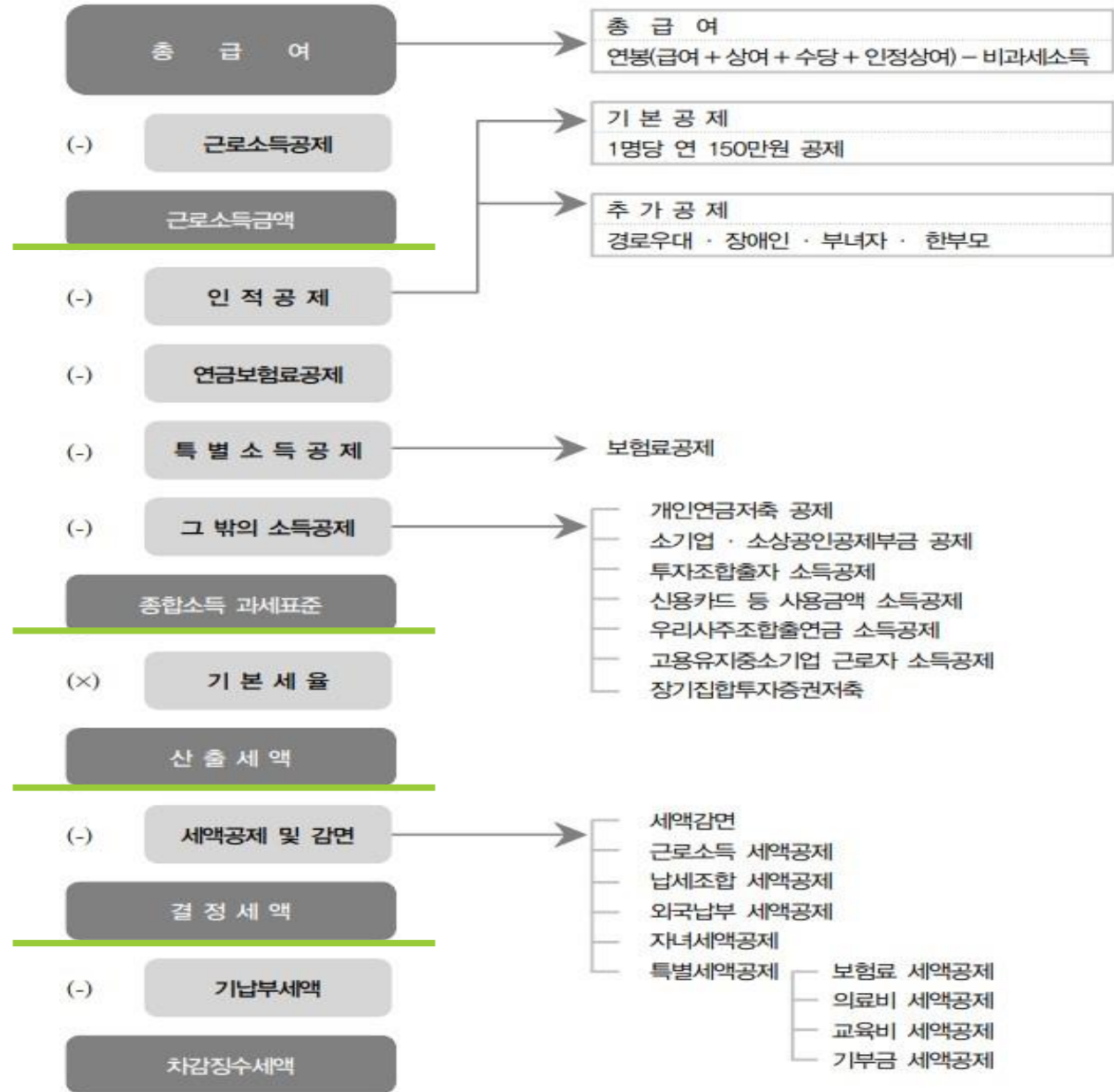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체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공제 항목 비교

항목	구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포함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참고) 내국인 및 외국인 공제 항목 비교

Type	Domestic		Foreign		Note	
	Resident	Non-resident	Resident	Non-resident		
Total wage & salary income	Including Foreign-source income	Domestic-source income	Including Foreign-source income	Domestic-source income	Article 3, Income Tax Act	
Deductions for wage & salary income	○	○	○	○		
Personal deductions	Basic deductions (Yourself, spouse, dependent family)	○	Only yourself	○	Only yourself	Article 122, Income Tax Act
	Additional deductions (Senior citizens, the disabled, woman, etc.)	○	Only yourself	○	Only yourself	Article 122, Income Tax Act
Deductions for pension insurance premium	○	○	○	○		
Special income deductions	National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	×	○	×	
	Housing fund	○	×	×	×	A foreigner is not deemed the head of a household.
Other income deductions	Pension savings, etc.	○	×	○	×	
	Deposits in a mutual aid fund for small enterprises and small entrepreneurs	○	×	○	×	
	Savings account for housing purchase	○	×	×	×	A foreigner is not deemed the head of a household.
	Contributions to a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investment fund	○	×	○	×	
	Credit card usage	○	×	○	×	
	Employees of SMEs that maintain employment	○	×	○	×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	×	○	×	
	Contributions to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	○	○	○	Applicable to all association members
Tax credits, etc.	Wage and salary income	○	○	○	○	
	Child tax credit	○	×	○	×	
	Special tax credit (insurance premium, medical expenses, education, expenses, donations)	○	×	○	×	
	Monthly rents	○	×	×	×	A foreigner is not deemed the head of a household.
	Taxpayer association	○	○	○	○	Applicable if you joined an association and taxes were withheld
	Foreign tax credit	○	×	○	×	
	Standard tax credit	○	×	○	×	

외국인 비거주자인 근로자의 공제 항목

- ◆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동일하나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차이
- ◆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적용 불가** 공제항목
(소 §122①)
 - ① **본인 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본인만 가능)
 - ② **특별소득공제**(소 §52)
 - ③ **자녀세액공제**(소 §59조의2)
 - ④ **특별세액공제**(소 §59조의4)

외국인(거주자) 근로자 공제 항목 주요 내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 원

인적공제

구 분	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p>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연금보험료 공제

- ◆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이내)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1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4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기부금	이월분	'13.12.31. 이전 기부금 지출액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20년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벤처 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80%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 -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한도 초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신용카드등 대중교통 이용금액('22.7~12월) 공제율 40%→80%로 한시적 상향
**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사용액 증가분(5% 초과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각 20% 적용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2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연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는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

자녀세액공제

- ①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②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다음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소득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징수한다.

- a.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b.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제한도 : 조합원1인당 연간100만원(22.1.1~24.12.31 발생 소득까지 적용)

외국납부 세액공제 1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1) 공제대상 범위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외국납부 세액공제 2

(2) 외국소득세액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 ㉓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 ㉔ ㉓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특별세액공제 1

세액공제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 본인·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비용(총급여 7천만원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15%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상환액 등	전 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특별세액공제 2

기부금	① 정치자금기부금	정당기부등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100 / 110
	②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등	(근로소득금액-①)×10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3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21년, '22년 기부분 15% → 20%, 30% → 35%
	④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주우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③)×10%+(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금액	
	종교단체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 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상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 13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에 대한 감면 및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외국인 포함)

- 대상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15~34세 이하 청년 : **90% 감면(5년간)**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70% 감면(3년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납부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 한도 : 연 150만원('23년 소득분부터 연 200만원)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신청

- 처음 3년간 **7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참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2021년 귀속)

2021년 하반기분	2021년 정기분	2021년 귀속 기한후신청	2022년 상반기분
2022. 3. 1 ~ 15	2022. 5. 1 ~ 5.31	2022. 6. 1 ~ 11.30	2022. 9. 1 ~ 15

◆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문의사항 : 장려금 상담센터(전화. 1566-363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등

◆ 월세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등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23년 귀속분부터 4억원)인 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에 딸린 토지가 일정 배율(도시지역의 토지: 5배, 기타 토지: 10배)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록된 주소가 같을 것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공제 한도

-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시 제외) : 월세액의 17%
- 연간 한도 : 월세액 750만원 이하

조세 조약상 소득세 면제

- ◆ 대상자 :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강사나 교수**가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를 하는 경우
 -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국가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이 없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국가 : 캐나다
- ◆ **인가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교 및 대학 등의 학교 및 이와 상응하고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국내의 외국교육기관
- ◆ 제출서류 :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부속 서류**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 분리과세특례

- ◆ 대상자 : 외국인 근로자 (조특법 §18조의2)
 - 비과세,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총 근로소득**에 **19%(단일세율)** 적용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은 미해당
- ◆ 제출서류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 ◆ 적용기한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3.12.31. 이전)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20년간**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해 발간한 안내책자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